

답을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소장과 면담한 사람 중 면담신청 즉시 면담이 가능했던 자는 2명이었고, 4~7회 이상 면담신청 이후 면담한 사람이 2명이었다. 한편 면담을 거절당한 자에게 어떠한 방식에 의해 거절당했는지 질문한 결과 15명의 응답자 중 7명이 거부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묵살당했다고 답변했다.

소장 면담은 일신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교정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는 데 제도적 의의가 있으므로 수용자의 수용생활에 매우 유용하고 신속한 구제수단이라 하겠다. 더구나 현행법이 당해 소장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장면담제도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범집행을 위하여 매우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응답자 중 13.6%만이 소장 면담을 신청하였는 바, 이는 수용자들이 소장면담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소장 면담을 신청하면 자신의 처우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용자들에게 소장면담제도를 정확히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소장 면담신청 이후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가 지연되거나, 면담신청이 일방적으로 묵살되는 과정에서 수용자와 교도관들 사이에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은 면담 신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이며, 시간적 한계로 신속한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업무담당자와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개선 방안

수용자에게 청원이 하나의 권리이고 청원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으로 확실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원서를 작성하는 것도 집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원서 작성을 위하여 집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실무에서 청원서 집필 허가를 늦게 하거나 허가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써 청원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청

원권 보장을 위하여는 집필 허가 없이도 청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원결정 지연을 막기 위하여 청원 처리를 신속하게 심사·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수용자청원처리지침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처분이 아닌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과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각하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청원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일반 국민의 청원을 규정하고 있는 청원법에서 청원자와 관련된 사항에만 한정하지 않고 교도소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수용자의 처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청원의 범위를 제한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각하사유로 하면 교도관에 대한 청원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각하사유로 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심리하고 이유 유무를 결정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변호사의 조력

가. 현행 법규

교도소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방법에는 크게 나누어 접견과 서신교환이 있다.

미결수용자의 형사 변호인과의 접견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바, 행형법에서도 접견 및 서신교환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장하고 있다.⁷⁾ 그리하여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할 때 시간제한이 없으며, 접견과

7) 행형법 제18조 제3항 : 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시행령 제54조 :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30분내로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정에 교도관이 참여할 수 없고, 교도관이 접견요지를 기록할 수 없으며, 접견 횟수 제한이 없다. 또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교환하는 서신은 검열할 수도 없다.

그러나 미결수용자가 아닌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무에서는 일반 접견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수형자가 사건 상담이나 소송 진행중인 사건의 준비를 위하여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접견 횟수 제한(월 4회)이 따르고(시행령 제56조), 접견 시간도 30분 내로 제한되며(시행령 제54조), 교도관이 접견에 참여하여 면담 요지를 기록하고(법 제18조, 시행령 제58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접견을 허가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소장은 수형자가 변호사와 교환하는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데(법 제18조의2), 서신의 내용이 ①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② 도주, 증거인멸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기도하는 경우, ③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④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장은 서신의 발송 또는 교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발송이 허가되지 아니한 서신은 당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수감생활 중 발생한 사건으로 변호사와 접견한 사람은 72명의 응답자 중 23

시행령 제56조 제2항 : 미결수용자의 접견(변호인과의 접견은 제외한다) 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
시행령 제58조 제1항 : 소장은 수용자와의 접견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성명, 직업, 주소, 연령 및 수형자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접견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접견자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접견시의 면담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접견을 신청한 자가 당해 사건의 변호인인 때에는 그의 성명 및 주소만을 기록한다.
행형법 제18조의2 제3항 : 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은 예외로 한다.

명이 있었다.⁸⁾

기결수의 신분으로 일반 면회실에서 접견한 사람이 2명이었고, 수형자, 미결수용자 모두 합쳐 교도관이 가까이서 대화내용을 들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55명의 응답자 중 14명이나 있었으며, 그 중 2명은 교도관이 대화 내용을 기록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접견시간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접견중지를 요구받은 사람이 전체 58명의 응답자 중 12명이었고, 실제 접견중지를 당한 사람은 54명의 응답자 중 8명이나 되었다.

징벌조사중 또는 징벌집행중 변호사와 접견이 가능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20명의 응답자 중 5명이 접견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등을 부탁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내려고 하였으나 교도소 당국으로부터 불허를 당했다고 답변한 사람이 19명의 응답자 중 2명이었고, 변호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려고 하였으나 불허당했다고 답변한 사람이 11명의 응답자 중 1명이었다.

기결수인 수형자가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진행중인 소송 준비를 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경우, 이를 교도관이 청취한다면 실질적인 소송상대방이 교도소측이 되는 경우 이미 소송 전략이 노출되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접견 시간을 제한하거나 접견횟수를 제한하는 경우 충분한 재판준비를 할 수 없고, 면담자 사이가 유리로 막혀 있는 일반 접견실에서 면담이 이루어지면 소송서류를 변호사와 함께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역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는 수형자와 민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에

8) 설문조사시 미결과 기결을 구별하지 않아 위 통계에는 미결수용자(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자)와 수형자(형이 확정되어 집행받고 있는 자)의 변호사 접견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사안의 성격상 기결수와 미결수의 접견을 구별하여야 할 것이나, 이 글에서는 변호사 접견 자체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굳이 구별하지 않고 통계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대해 당해 민사사건의 상담 및 사전 준비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의 접견제한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소장의 전적인 자유재량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였고, 접견시간의 제한이 소송준비를 위한 사전준비에 대한 직접적 제한이고 본건에서 접견시간을 30분 이내에 제한하는 것이 처우상은 물론 형무소 내의 규율질서상의 필요가 있다고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도쿠시마형무소 소장이 본건 각 접견에서 30분 이내로 하는 조건을 단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⁹⁾

서신교환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소송과 관련하여 교환되는 서신을 교도소측이 검열하는 경우 소송내용이 전부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소장은 수용자가 변호사에게 발송하고자 하는 서신의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도주, 증거인멸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기도하는 경우나, 수용자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서신의 발송을 제한할 수 있다(실제 소내 처우나 교도관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를 내용으로 하여 변호사와 서신을 교환하고자 할 때,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였다는 이유로, 또는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서신교환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다. 개선 방안

헌법 제27조에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공정한 재판이란 정당한 재판으로서 당사자에게 충실한 공격과 방어가 전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용자가 소송의 진행을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실한 공격과 방어가 준비

9) <http://www.nichibenren.or.jp/hrsympo/manual/case-e.htm>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 이루어지나, 수용질서 유지, 교정교화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서만 제한되어야 하는데,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경우 수용질서 유지 또는 교정교화를 위하여 접견을 제한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형사사건뿐 아니라 일반사건을 위하여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접견시간, 접견횟수를 제한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접견내용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가청거리가 아닌 가시거리 범위 내에서 교도관의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변호사와의 서신교환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서신교환과 마찬가지로¹⁰⁾ 교도소측에서 상대방이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되려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서신을 통해 마약 등 소지금지품의 반입을 도모한다든가 그 내용에 도주, 증거인멸, 수용시설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 기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등이 없는 이상, 검열이 없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용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각 교도소에 공익법무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소장 작성 등을 위한 집필

가. 현행 법규

수용자가 교도소 내 처우에 관한 불만사항 또는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수사당국 또는 사법당국에 고소 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청원 등을 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문서의 작성 및 발송에 대하여 행정법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10)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결정 참고

있다.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 또는 도서를 작성하거나 문학, 학술 기타 사항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집필할 수 없다(행형법 제 33조의3). 그리고 수용자가 집필한 문서 등은 교도소 등에 영치하여야 하나, 수용자가 집필 후 외부에 발송할 것을 원하거나 소장이 기간 또는 분량을 정하여 수용자에게 그 소지를 허가한 경우에는 발송 또는 소지할 수 있다. 소장은 수용자가 집필한 문서를 외부에 발송하고자 하거나 석방시 가지고 나가하고자 할 때 이를 허가하여야 하나, 집필문서의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도주·증거인멸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기도하는 경우,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외부 발송이 허가되지 아니한 문서 등은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행형법 시행령 제67조).

‘재소자 집필제도 운영개선’에서 집필 불허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불허사유로 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내용, ② 범죄에 관한 증거인멸이 우려되거나 도주 등을 모의하려는 내용, ③ 타재소자 등과의 부정연락 등의 방편으로 악용하려는 내용, ④ 교정직원이나 타재소자 등을 모욕하거나 음해하려는 내용, ⑤ 처우에 관한 불만이나 소내 생활의 내용 등을 청원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외부에 알리려는 내용, ⑥ 암호 등으로 작성하여 이해할 수 없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외국어로 작성한 내용, ⑦ 기타 수용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이다.

그리고 징벌조사중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서신수발, 집필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¹¹⁾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서신교환, 집필이 금지되고 있다.¹²⁾

11) 징벌규칙 제7조 :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기간 중 당해 수용자에 대한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 및 도서열람, 라디오 청취, 텔레비전 시청과 자비부담의 물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인권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수감생활 중 발생한 일로 형사고소 또는 소송을 하기 위하여 집필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당한 사람이 5명의 응답자 중 3명이었다. 불허당한 3명이 ‘집필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몇 번이나 집필신청 요구를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2명이 2~3회라고 답하였고, 1명이 8번 이상이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위 3명이 이와 같이 여러 차례 집필신청을 하였으나 끝내 집필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와 같이 응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불허당한 사람이 어떠한 사유로 불허당했는지 알 수 없으나, 소내 생활 중 발생한 일을 하소연하기 위하여 고소나 제소 또는 국가기관에 조사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집필 문서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과연 교정교화 또는 교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행형법에서는,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 집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집필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재소자 집필제도 운영개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필불허사유도 행형법에서 정한 위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집필권 제한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교정직원이나 타재소자 등을 모욕하거나 음해하려는 내용’, ‘처우에 관한 불만이나 소내 생활의 내용 등을 청원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외부에 알리려는 내용’,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간섭 또는 왜곡한 내용’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나 교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에 집필불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소, 제소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 등이 위 세 가지 중

12)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 청취, 텔레비전 시청 및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하나에 해당할 수밖에 없고, 실제 많은 집필 내용이 위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당하고 있다.¹³⁾

한편 집필권 못지 않게 집필문서 발송 자체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현행 법규 형식상 집필문서 발송의 제한을 행형법이 아닌 행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원리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 대부분 집필불허사유가 발송불허사유와 중복되어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현행법상 집필은 가능하나 발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용자가 교도소 외부에 있는 타인에 대하여 억울한 감정을 갖고 모욕하는 글을 기재하여 언론사에 보내는 경우, 위 내용은 교도소 등의 안전, 질서나 교정교화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집필은 가능할 수 있으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여 발송을 불허당할 수 있다(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 개선 방안

집필은 수용자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며,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집필권의 제한은 매우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집필권 제한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집필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집필한 문서의 발송을 제한하는 것인 바, 현행 행형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사유 및 제한정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우선 집필 그 자체의 제한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형법에서는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와 '교화'를 집필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필 그 자체로 인하여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위험'이 발생하거나 집필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구금

13) 법원은 서신의 내용이 '채소자 집필제도 운영개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내부 업무처리지침으로서 발령한 위 '채소자 집필제도 운영개선'에 의하여 감호자의 집필에 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0. 5. 29. 선고, 99가합35 판결).

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이나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어디에도 집필 그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독일 행형법이나 일본 감옥법에서도 문서교환의 제한사유는 규정되어 있으나, 집필 그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위 두 가지 사유는 집필문서가 교환될 때 비로소 문제될 수 있기에, 집필문서 발송 제한으로 다를 문제이지, 집필 그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편 집필문서 발송 제한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행형법규는 집필문서 발송 제한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집필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집필 그 자체보다는 집필문서 발송 제한이 수용자들에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이고, 발송 제한도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므로 발송 제한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형법 시행령에 의하면, 집필문서를 수용자 중 외부에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와 석방시에 가지고 나가하고자 하는 경우 모두 그 제한사유¹⁴⁾가 동일하다.

그러나 수용자가 석방시 집필문서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까지 '도주,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제한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가사 교도소 등의 안전질서를 고려해야 할 상황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수용 중의 경우와는 달리 표현의 자유를 우선 보호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시행령 제68조 제2항 후문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문서 등은 당해 수용자에게 통지한 후 이를 폐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자 작성의 문서는 수용자의 것이고, 서신의 내용이 불법을 구성하는 경우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외부발송을 제한당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몰수나 폐기의 결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등이 수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지 통지한 후 폐기하는 것은 수용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

14) ①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 도주, 증거인멸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기도하는 경우, ④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⑤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

이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로 독일 행형법에서는 허가받지 못한 서신에 대해서는, 행형시설에 영치하도록 하고 있다.¹⁵⁾

6. 기타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법전을 볼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60명의 응답자 중 13명이 열람했다고 답변했고, 24명이 열람 요청을 하였으나 볼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열람할 수 없었다고 답변한 사람들 중에서 구매를 시도했으나 구매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사람이 5명이나 되었다. 부당한 처우로부터 수용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법전이나 수용생활과 관련된 규칙을 비치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7. 결론과 정책제언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곳일수록 갈등이 더 심화되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금시설 내에서의 갈등해결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금시설 내에서의 갈등이 여러 이유로 은폐되고 있으며 갈등해결을 위한 행동들이 억압되고 있다. 이는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구금시설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그러므로 수용자들이 갈등해결의 방식을 다양하게 터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며, 외부와 연결되는 다양한 통로를 가능한 한 폭넓게 인정하는 것

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독일행형법에 관한 연구, 1997, 96쪽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응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용자들에게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수단들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수용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불복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원¹⁶⁾ 이외에 다른 불복수단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원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청원을 신속하게 심사, 처리하라는 의무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형사사건 이외의 일반 사건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의 접견시 접견횟수, 접견시간 등의 제한을 없애고, 접견실 차폐막 시설을 제거하여야 하며, 교도관이 가청범위 밖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변호사와의 서신교환도 구금시설측에서 상대방이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되려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서신을 통해 마약 등 소지금지품의 반입을 도모한다든가 그 내용에 도주, 증거인멸, 수용시설의 규율과 질서 파괴, 기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등이 없는 이상 검열 없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집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기하고, 집필문서 발송 제한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집필문서 발송 제한은 수용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석방시에는 제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6) 행형법 제6조 제5항 : 소장은 수용자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건강·의료

김희수

1. 문제 제기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형벌로써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지극히 제한적인 자유만을 누리고 있다. “죄를 짓고 그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료권이냐”고 말하는 일부 관료와 사람들도 있지만, 비록 죄를 짓고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도 우리 국민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소중한 이웃이기에 지극히 제한적인 자유만을 누리고 있는 이들의 최소한 인간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문제는 그래서 더욱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특히 2001년도 말과 2002년도 초에 발생한 울산구치소 구승우 씨, 서울구치소 조순원 씨, 수원구치소 박명원 씨 등 일련의 사망사건들은 교도소 등의 의료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제 이런 최소한의 권리문제에 대하여 몇몇 인권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보여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재소자들의 의료권 문제는 대법원에서도 재소자가 구치소측에 수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병이 악화된 경우에 국가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사례들도 있어(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7719;2000다51052 판결), 오히려 국가가 사전에 이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절약한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있고, 법무부 등 국가기관도 이에 대하여 단순히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아래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칭함)에서 실시하였던 시설조사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규정과 현실, 국제법규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설문조사의 응답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이 존재하고, 아울러 교도소나 구치소측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였다면 좀더 바람직하고 정확한 설문조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도 아쉬운 점이라고 본다.

2. 국내 행정법규

가. 신입자 건강진단

행정법 제8조 제2항은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건강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2조는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교도소 등의 의무관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수용자 건강진단

행정법에는 수용자 건강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다만 시행령 제97조는 '소장은 독거수용자 및 20세 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 3월에 1회 이상, 기타의 수용자에게는 6월에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는 소장 및 교도소 등 소속 의무관은 매주 1회 이상 독거수용자를 시찰하여야 하며, 제103조는 '소장은 수용자의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법무부 훈령 제174호(1986. 11. 29.)로 '재소자건강진단규칙'을 정하고 있는 바, 위 재소자건강진단규칙은 제3조에서 신체 건강진단은 키, 몸무

게, 가슴둘레, 영양상태, 팔, 다리, 시력, 청력, 언어, 혈압, 질병 기타 신체상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제4조에서는 정신과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신감정을 실시하도록 하며, 제10조에서는 혼거 구금한 2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4월과 10월, 혼거 구금한 20세 미만자 및 독거 구금한 20세 이상자에 대하여는 1월, 4월, 7월 및 10월, 독거 구금한 20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매월 정기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석방자에 대하여도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병실 수용 및 외부병원 치료

행형법 제26조는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 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8조에서 수용자가 자비로써 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9조에서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당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등의 밖에 있는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105조에서는 외부병원에 이송하였을 때,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다.

라. 기타 의료관련 규정

다수의 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시설의 특성상 전염병에 관한 규정을 자세히 두고 있고, 수용자가 진료나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여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소장은 의무관 등으로 하여금 영양 보급 등의 의료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시행령 제97조), 질병이 위독한 중환자의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04조)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소자의약품관리규정'(예규 관리 제377호, 1993. 2. 26.)에 의거하여 재소자가 본인의 건강유지, 질병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변으로 구입 사용하는 자변의약품, 재소자가 본인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영치 금품의 접수절차에 준하여 차입 허가된 차입의약품 등의 구입, 관리, 투약, 복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설문조사 결과 및 내용

가. 진료를 받을 권리 고지 문제

교도소와 구치소에 입소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지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이는 형법상 수용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즉 고지받을 수 있는 권리는 수용자 등이 누릴 수 있는 의료권을 미리 알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며, 동시에 현행 의료체계의 문제를 이들이 가늠해 볼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료권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한 경우가 71명 응답자 중 23명이고, 정기검진, 병원 입원, 의무관에 의한 진료, 외부병원 진료, 자변의약품 등 자세한 권리를 거의 다 고지받은 경우가 약 10명이고, 나머지는 대다수 많은 의료권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고지받은 경우에 해당하였다.

형법상 의료권에 대한 고지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재소자 의료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법령에 관계 공무원의 의료권 고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나. 신입자 건강진단

교도소나 구치소에 입소할 때 자격있는 의사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람이 응답자중 약 41%(31명)에 해당하고, '없다'는 응답이 59%(44명)에 이르렀는 바, 1998년 「한국 감옥의 현실」(도서출판 사람생각에서 출판한 책으

로 이후 '한국 감옥의 현실' 이라고만 언급하겠음)에서 나타난 바와 비교하여 보면, 건강진단을 받았다는 경우가 약 1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그나마 대체적으로 건강진단 문제는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내용에 대한 설문응답 결과를 보면 키, 몸무게 측정 및 시력측정, 치아검사, 혈압검사, 엑스레이 촬영, 피검사, 의사가 청진기 대고 진찰, 문진 등 거의 모든 신체검사 분야를 거의 다 진단받은 경우는 응답자 중 2명에 불과하였고, 위 재소자건강진단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11가지 조사 사항 중에서 5개 항목 이상의 검사를 받은 경우는 5명에 불과하여 대다수는 지극히 형식적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입자의 건강진단에 심지어는 의사가 아닌 교도관이 문진만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대답한 사람도 1명 있었다.

재소자에 대한 형식적인 책임 회피성 건강진단이 아닌, 건강진단을 내실화하여 재소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문제점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지원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1998년도의 한국 감옥의 현실에서 나타난 바와 비교하면 건강진단을 받았다는 경우가 전체적으로는 증가되었으나, 질적으로는 전혀 향상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수용시설 내 정기검진

수용시설 내에서는 수용자들에 대하여 정기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데, 수감생활중 의사로부터 정기검진을 받은 적이 있다는 대답이 6명에 불과하였고, 받은 적이 없다는 대답이 52명에 이르렀으며, 받은 적이 있다는 사람 중에도 월1회 1명, 6개월, 10개월에 받았다는 대답이 각 1명씩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대로 수용시설 내에서 정기검진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응답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수용시설 내 정기검진은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라. 수용시설 내 전문의료진

교도소나 구치소에 치과의사나 치과 전문 공중보건과의가 있느냐는 대답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15명, '아니다'는 응답이 17명이었고, '모르겠다'고 대답한 경우가 37명에 해당하였다.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 자격있는 약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가 15명, '아니다'라는 응답이 8명, '모르겠다'는 대답이 50명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수용시설 내 전문의료진의 유무에 대해서 대다수 수용자가 모르겠다고 답한 것을 보면, 실제로 수용시설 내에 있는 수용자들이 자신을 치료하는 사람이 과연 자격 있는 의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법무부가 본회에 보낸 2002. 7. 16.자 「교정시설 현황 자료에 대한 회신 자료」를 보면 서울·성동구치소, 안양·영등포·의정부교도소 등의 의사 정원은 14명인데, 현원은 11명으로 의사 수가 그나마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약사의 경우는 위 6개소 중에서 영등포구치소와 교도소, 의정부교도소의 경우는 아예 배치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방사선사의 경우는 위 6개소 중에서 안양교도소, 영등포구치소와 교도소, 의정부교도소의 경우는 아예 인원이 없어서, 빈약한 수준이지만 일부 확보되어 있는 X-ray 같은 의료기기 등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몸이 아파서 의무과에 가고자 했을 때 의무과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는 일이 쉬운 일이거나 보통이었다고 대답한 사람이 38명이었고, 힘들거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26명에 이르러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접근권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졌고, 이는 의료사고의 개연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진다.

의무과에 가기 힘들었던 이유에 대하여는 대기환자가 많다는 이유가 6명, 의사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가 8명, 정해진 진료시간이 아니라는 이유가 6명이었고, 교도관이 마음대로 의사의 진단이 필요 없다고 이유를 들은 사람도 11명에

이르렀는 바, 대기환자가 많다는 경우는 과중한 업무분량과 관련하여서도 문제이고, 의사가 자리에 없거나 정해진 진료시간이 아니라는 문제는 교도소 등의 의사들이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여만 근무하기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문제이고, 교도관이 마음대로 판단하여 의사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사유는 심각한 의료체제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점으로 보여진다.

또한 의무과에 제 때에 가지 못하여 건강이 악화된 경험이 있느냐는 대답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9명이었고,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나머지 47명의 응답이었는데, 이는 소수의 응답자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건강이 악화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치명적인 사망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서 최근에 빚어진 일련의 구치소 사망사건 및 대법원 판결 등과도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도 하다.

의무과에 가서 누구로부터 진찰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다는 응답이 16명이었고, 심지어 교도관, 재소자로부터 받았다는 대답도 8명에 해당하였고, 의무관이나 공중보건의로부터 진찰을 받았다는 응답이 32명에 이르렀는 바, 교도관이나 재소자들로부터 진찰을 받았다는 문제는 그것이 몇 명이나 하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점이다.

의무과나 약국에 갔을 때 누가 약을 제조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의무관, 공중보건의, 약사라는 응답이 25명이었고, 모르겠다는 대답이 24명인데 반하여, 교도관이나 재소자가 약을 제조하였다는 응답도 9명에 이르러 역시 심각한 문제이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부분이다.

마. 병실 입원 및 외부병원 이용

몸이 아팠을 때 병사에 입원하기가 어떠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쉬운 일, 보통 일이었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13명이었고, 힘들었다, 거의 불가능했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23명에 이르러 병실에 입원 치료를 받는 것

이 여전히 높은 벽임을 알 수 있다.

의무관에게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라고 요구받은 경우는 8명 있었고, 대다수인 45명은 없다고 대답했다. 자비부담 수용자의 치료 내용을 보면 간염, 치과, 정밀진단이 필요한 CT 촬영, 진단서 발급비용 등이다.

더욱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명, 없다는 사람이 34명에 해당하였는 바,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은 수용시설 내에서 아파도 치료도 받을 수 없고 외면 당해야 하는 이 문제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여진다.

외부병원의 진찰이나 진료를 신청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언제나 가능했다가 1명, 돈이 없이는 어려웠다가 11명, 돈이 있어도 어려웠다고 대답한 사람이 6명 합하여 94%가 외부병원의 진찰이나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고,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경우가 67%(8명)이었고 나머지는 교도소(1명), 교도소와 본인의 부담의 경우(3명)로 대답하였다.

4. 의료현실의 개선안

가. 법령, 제도상의 문제

첫째, 독일행형법 제56조 제1항은 수형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형당국에 적극적 보호 의무를 정하고, 제2항에서 수형자는 위생보호 및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형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우리 행형법도 수형자가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이 보호되어야 할 의료권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권리로서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행형당국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의무와 책무를 부여하고, 수용자에게도 정당한 자신의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현행 형행법과 같이 대다수 의료권에 대한 접근을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혹은 '— 허가할 수 있다'는 등의 소장의 재량에 의존하는 체계일 경우 누가 소장이나에 따라 수용자들의 건강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문의료진에 의하여 진료를 받을 권리에 관한 규정인 바, 이미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는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원칙 제22조는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전문의와 자격있는 치과 의사로부터 치료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고, 유럽규칙 제26조도 동일한 조항을 두고 있는 바, 우리 형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정신과적인 치료는 건전한 심신의 발전과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이의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의 인식부터 우선 바뀌어야 하고, 재소자건강진단규칙 제4조에서도 정신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사문화되어 있는 바, 이를 훈령이 아닌 법으로 명시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의료진에 의하여 진료를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으로 보여지는 바,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2001. 2. 현재 의사, 약사, 간호사 및 의료 기술직 등 총 143명이 배치되어 수용자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의사는 65명, 공중보건의사는 2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2001년 「법무연감」에서 밝히고 있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1일 평균 수용인원이 63,472명에 이르러 의사 1인당 721명의 재소자를 담당하고 있어, 2001년 일반 사회에서 의사 1인당 150명 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 위 인력으로 진료를 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권위원회에서 조사 당시 교도소에 근무하는 한 의사는 하루 평균 300여명을 진료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약사, 방사선 기사마저도 없어서 실제로 반입되어 있는 의료기기들도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교정당국은 막대한 자금과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그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제는 예산 타령을 하며 후순위로 미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현실적인 인식의 재고와 더불어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시기라 보여진다.

최근 다행스럽게 법무부는 군복무나 보건소 근무를 지원한 의사자격증 소지자를 교도소나 검찰에 배치해 근무하도록 하는 공익법무의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형행법 제29조는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당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등의 밖에 있는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최근에도 있었던 일련의 구치소 사망사건과 같은 의혹사건들도 이런 규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독일의 형행법 제65조와 같이 행형시설 외부의 병원으로 보내져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외부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돈이 없이는 어려웠고, 돈이 있어도 어려웠다는 것이 외부병원을 이용한 사람들 중 답변의 94%에 이르는 현실을 보아도 형행법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고 보여지며,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료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교도소장의 재량에 거의 일임되어 있는 외부병원 이송 및 진료 등은 자의적인 법적용으로 호를 우려가 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료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먼저 우리의 형행법 제29조를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법조항이라고 보여진다.

넷째, 의료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보호원칙 제26조는 억류 구금된 자가 의학상의 검사를 받은 사실과 의사의 성명 및 검사결과는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이들 기록에의 접근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규정을 우리 형행법에 입법화한다면 수감자의 가혹행위, 의료진들의 치료행위, 행형당국의 행위 등을 모두 감시·감독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것과 같이 형식적인 신입자 건강검진, 정기검진 등의 행위도 방지하고, 수용자들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내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야간과 공휴일 등에 의료진이 수용자들을 보살필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다. 2002년도에 발생한 일련의 구치소 등의 사망사건 대다수가 야간이나 공휴일 등이었다는 사실도 우연의 결과는 아니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용자가 몸이 아파도 의무과에 가기 어려운 이유로 의사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 정해진 진료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 등이 37.2%에 해당하는 바, 이는 의사 등이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여 근무시간을 갖기 때문인 바, 수많은 사람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시설에 최소한의 의료진이 야간과 공휴일에도 근무를 할 수 있는 의료규정에 대한 제도적 입법과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섯째,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문제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는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중 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결구금 수용자들의 경우에는 문제성이 심각하다고 보여진다. 미결구금 수용자는 헌법상 무죄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수형자와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보험 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지며, 아울러 확정판결을 받은 수용자라고 할지라도 국가에서 수용하고 있는 한 모든 의료비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일정한 조건하에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와 입법 장치를 마련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로 독일 행형법 제65조 제2항은 수형자가 병원에 체류하는 동안 형집행이 중단된 경우 법적 의료보험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는 필요한 급부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의 법개정에 있어 참고할 부분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행형법규상의 처벌규정의 신설문제이다. 현행법령상으로도 자

격있는 의사나 약사가 아니면 진료나 약을 제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시설 내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와 약품 제조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기도 하고 너무도 암울한 현재의 우리나라 감옥의 현주소로 보여진다. 물론 현행법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교도기관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행형법에 특별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 볼 시기라고 보여진다.

나. 운용상의 문제

법률적으로나 혹은 제도적으로 미비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향후 개선이 있기 전까지라도 교정당국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즉 현행법상 신입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지극히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그치고 있는 문제라든지, 혹은 수용자들에 대한 정기검진이 거의 사문화하고 있는 현실은 교정당국의 항변과 같이 단순한 예산부족 탓만은 아닐 것이다.

특히 대법원 판례나 일련의 구치소 사망사건과 같이 교도소장 등이 좀더 재소자 건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사망 등의 경우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은 반드시 교정당국의 재소자 인권에 대한 의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 홈페이지는 의사와 의료장비가 부족하여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에 교도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외부병원으로(현재 225개 종합병원이 지정되어 있음) 이송하여 신속하게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고,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전 수용자에게 연 1회 이상 X-ray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설문조사 결과나 일련의 구치소 사망사건을 보면 연 1회 이상의 X-ray 검진이나 정기검진은 거의 없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고, 외부병원 이송 및 진료도 지극히 어려운 접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정당국의

의식 변화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1년도 「법무연감」에는 수용자 의료비를 1인당 37,000원에서 48,000원으로 대폭 향상하였고, 의료장비 보강 등으로 수용자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는 바, 「법무연감」만으로 보면 상당한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면, 영국의 경우 1인당 수용자 의료비가 320만원,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우 420만원에 이르는 실정이고, 독일의 경우는 일반 사회 병원보다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정기검진과 병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국가 관계자들은 수용자가 자신의 신체적인 자유를 거의 절대적으로 구속받고 제한당하고 있는 형벌을 받는 만큼 수용자는 오히려 건강권에 대하여 더욱 일반인보다 보호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생각을 (KBS 취재파일 2002. 9. 1.자 보도) 교정당국 등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한 사회에 대하여 알기 원한다면 감옥을 들여다보면 될 것이다”라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처럼 재소자들의 의료문제에 관해서는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이었다.

우리나라의 국부의 정도와 OECD 가입국가 등의 수용시설 의료실태와 비교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언급한 선진국가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도 열악한 의료 수준을 극복하고 적절한 수준까지 최소한의 수용자들의 의료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및 의식의 전환과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징 벌

김 진

1. 머리말 - 조사의 목적과 범위

구금시설에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이하 '수용자'라 약칭한다)에게 과해지는 징벌은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징벌사유, 징벌 조사과정과 징벌의결 등의 절차, 선택된 징벌처분의 집행 등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수용자에게 형집행 이상의 고통을 주거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연합(UN)의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이하 '최저기준규칙'이라 약칭한다)」은 '규율 및 질서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하나, 안전한 구금과 질서있는 소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제27조)'고 하며, 우리 행형법 또한 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 부과 수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명시하여(제46조 제3항) 과잉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본원칙을 염두에 두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구금시설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시설조사(2002. 4. 22. 서울·성동·영등포 구치소, 안양·영등포·의정부교도소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 이하 '본회 인권위원회'라 약칭한다 - 소속 변호사들이 행하였다)와 설문조사(2002. 2. 15.부터 5. 20. 사이에 당직변호사, 국선변호사, 기타 회원에게 발송하거나, 안양·영등포·의정부교도소의 3·1절 가석방 출소자에게 배포하여 회수한 것으로, 총 응답자는 78명이다)의 결과와 현행 법령의 관련내용을 검토하고, 그러한 실태가 행형에 관한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비추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본다(주로 문제가 되는 국제인권법으로서 피구금자의 권리장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국제연합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약칭 최

저기준규칙)」과 「유럽형사시설규칙」 그리고 국제연합의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약칭 보호원칙)」이 있다.

2. 조사 내용

가. 징벌사유

1) 관련 규정들과 원칙

행형법 제46조 제1항은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1호), 자해행위(2호),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 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3호), 흡기 주류 등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제작, 소지, 사용, 수수, 은닉하는 행위(4호) 외에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5호)를 한 때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령인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이하 '징벌규칙'이라 약칭한다)」 제3조는 제1호에서 제35호에 걸쳐 수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을 정하고 있으며, 제35호에서 '제1호 내지 제34호 외에 수용자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지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최저기준규칙과 유럽형사시설규칙, 국제연합의 보호원칙은 공통적으로 '규율위반을 구성하는 행위(즉 징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법률이나 권한있는 행정관청의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특히 「보호원칙」은 정확히 공표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수용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에 징벌권이 발동될 것인지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행형당국의 자의적인 징벌부과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징벌법정주의'를 선언한 것이다.

1995년 개정 전 행형법이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징벌에 처한다고 하여 규율위반을 징벌의 요건으로 하면서 그 규율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데 비해, 개정법이 제46조 제1항을 둔 것은 징벌요건을 법정하고,

법무부장관이 수용자의 규율을 정할 때 적어도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징벌규칙에서 정한 수용자 준수사항은 매우 광범위하고 특히 제35호의 포괄적 규정을 둬으로써, 행형당국의 자의적 조치를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부족하다.

2) 실태와 문제점

인권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중에는 싸우거나 부정서신을 보냈거나 오물을 투척했다는 수감할 만한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던 반면, 구치소의 식수에 녹물이 들어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항의하거나 식사량 부족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교도관의 부당대우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징벌규칙 제15호의 '교도관의 지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가 되어 징벌이 부과되기 쉽기 때문에 문제 제기 자체를 사실상 봉쇄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취침시간 외에 허가없이 잠을 자거나 자리에 누워서는 아니된다(26호)', '청소 또는 정돈을 소홀히 하거나 낙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을 벽 등에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28호)'는 준수사항은, 교도소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용자의 일상생활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의 소지를 낳아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다.

나. 징벌의 종류

1) 징벌의 종류에 관한 규정과 원칙

현행 행형법은 1995년 개정 전의 행형법에 규정되었던 2월 이내 서신 접견금지, 2월 이내 작업금지, 5일 이내 운동정지, 7일 이내 감식 등 4종을 삭제하고, 3월 이내 도서열독 금지를 1월 이내 신문 도서열람 제한으로 개정하였다. 그 결과 현재 우리 법이 허용하는 징벌의 종류는 1) 경고, 2) 1월 이내 신문 도서열람

제한, 3) 2월 이내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4)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삭감, 5) 2월 이내 금치의 5가지이다(행형법 제46조 제2항). 이들 징벌 중에서 어떠한 징벌을 선택하고 어느 정도의 징벌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징벌규칙 제4조는 구체적인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징벌기준을 정하고 있다.

국제인권법들은 징벌의 종류와 기간을 법정할 것(이른바 「징벌법정주의」) 이외에도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징벌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은 체벌이나 암실수용을, 유럽형사시설규칙은 그 외에 집단적 징벌을 예로 들고 있다.

2) 실태와 문제점

징벌의 종류에 관한 규정이나 실태에 관한 국정감사자료,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징벌 집행은 「금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 교정국 자료에 의하면 1996년도 총 징벌인원 6,592명 중 금치벌 집행자가 6,171명으로 93.6%를 차지하고 나머지 421명이 경고를 받았으며, 도서열람 제한, 청원 작업 정지, 작업상여금 삭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1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는 9,994건의 전체 징벌 건수 중 8,960건(전체의 89.6%), 나머지 984건이 경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원회의 2002년 설문조사에서도 징벌경험 있는 자 8명 중 4명이 금치처분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징벌규칙이 정한 징벌양정기준 자체가 35호까지 35가지 준수 사항 위반 중 31, 32호(허가되지 않은 도서를 입수, 열람하거나 취침시간에 다른 수용자가 잠자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 1월 이내의 신문 도서열람의 제한 또는 경고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치처분을 할 수 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그 양정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나 기준이 없어 징벌 집행자의 자의에 의해 가장 과중한 징벌이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연도	징벌건수	처리 결과					
		금치 2월 이하	금치 1월 이하	금치 20일 이하	청원작업 정지	도서열람 제한	경고
1999	8,707	3747	3699	293	1	2	965
2000	9,994	4588	4161	212			984
2001. 7.	7,127	2871	3666	91			499

둘째, '금치처분'의 경우, 단순히 징벌실에 가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기간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 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 시청과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금지(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하기 때문에, 다른 징벌을 함께 병과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징벌권자들이 다른 징벌이 아니라 금치를 가장 자주 활용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특히 위 시행령에 의해 금지된 자에게 행해지는 '서신·접견 금지와 작업금지·운동정지'는 1995년 행형법을 개정하면서 '외부와의 교통권을 차단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징벌의 종류에서 제외된 것이라는 점에서, 법률에서 삭제한 징벌을 시행령으로 사실상 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본디 금치는 징벌실(독거실)에 수용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유형이 가중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수용자의 인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인 바, 현행 금치처분은 교정처우에서 주어지는 수용자 권리의 대부분을 제한하고 있어, 피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행형법 제46조 제3항 위반). 게다가 이러한 금치처분의 내용은 2000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래 명시되지 않았던 전화통화, 집필, 신문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까지 금지 대상으로 추가되어, 박탈되는 권리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독일 행형법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법의 금치처분이 시행령에 의해 매우 가혹하게 운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행형법상 '4주 이내의 구류' 처분시 작업, 신문 잡지 구독, 라디오, TV, 자유시간 향유를 위한 물건소유 및 장식, 복장, 구입, 강의 등에 관한 수용자의 권한은 정지되나,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등의 외부와의 교통권은 차단되지 아니하며(다만, 긴급시 교도소 외부인과의 3개월 교통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징벌이 있다), 집필이나 운동은 금지되지

아니한다(제104조 제5항, 장규원, <독일 행형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120면).

결국 금치의 효과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위 시행령의 조항은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징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용자의 규율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치보다 가벼운 다양한 징벌 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독일 행형법의 경우, 경고와 4주 이내 구류의 중간단계의 징벌로서, 수형자 부양가족 급부금 처분권 및 3월 이내의 구입권 제한 또는 박탈, 2주 이내의 독서물의 제한 또는 박탈 및 3월 이내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시청 제한 또는 박탈, 4주 이내의 자유시간 동안의 격리수용, 1주 이내의 주간의 야외체류 박탈, 법상 규정된 급료 중단하에 4주 이내의 할당된 작업 또는 노역의 박탈, 3월 이내의 교통권 제한이 징벌조치를 정하여 총 9종을 두고 있다. 장규원, 앞의 책, 122면).

셋째, 금치의 최장 기간이 '2월'로 되어 있는 것은 지나치게 길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금치기간을 '2월 이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위 국정감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징벌의 40~50%가 1월~2월의 금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상적인 활동이 모두 차단되는 금치기간이 2개월 동안 계속될 경우,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틀림없다.

다. 징벌절차 - 징벌조사와 징벌의결

1) 조사실

2002. 4. 22. 각 구금시설의 실제 시설조사시,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는 조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일반 독거사방과 동일하다'고 설명하였지만, 대부분 징벌실과 별도로 조사실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영등포교도소 조사실 일부는 내부의 전면이 보이도록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

었으며, 성동구치소의 조사실은 사동과 어느 정도 분리된 건물에 위치하여 고층처리·상담·조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형태로 2개방, 각 5평 정도 크기로 일반 상담실과 같은 책상과 조명이 있고 외부창문은 잠겨있지 않은 채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의정부교도소 조사실은 3.31평 크기로 징벌실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

2) 진술기회의 부여와 관계인의 출석

징벌은 수용자에게 과해지는 처우상 불이익처분이므로 수용자는 자신의 징벌혐의내용에 대해 고지받고 규율위반의 조사과정이나 징벌위원회 의결절차에서 소명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최저기준규칙 제30조 제2항은 '피구금자는 자신에 대하여 주장되는 위반을 통고받고 이에 대해 항변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징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유럽형사시설규칙 제36조 제3항도 같은 내용으로 고지와 반론할 기회 부여를 명시하고 있고, 보호원칙은 청문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다(원칙 제30조). 최저기준규칙이 항변할 '기회'를 부여한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호원칙 제30조는 청문받을 '권리'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 행형법에는 이에 대해 규정이 없지만, 징벌규칙은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줄 것(제7조 제1항 제2호)과 징벌혐의자를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징벌혐의내용을 심문하고 진술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제8조 제4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에 응한 징벌경험자(15명) 중 13명은 징벌 전에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나머지 2명도 '출석한 적도 있고 하지 않은 적도 있다'고 응답하였다(1996년 행해진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수용자 104명 중 73.1%가 징벌위원회에 불출석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 40.8%가 출석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고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출석한 사람이 27.6%, 귀찮다는 이유가 15.8%, 기타 이유가 15.8%였다. 김명곤, 앞의 글, 216면). 또한 징벌위원회에서 직접 이

야기할 기회를 가진 사람은 1명이었으나, 그도 시간이 부족하여 충분히 진술할 수가 없었다고 답하고 있다. 이는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 행형법도 국제연합 보호원칙과 같이 징벌이 집행되기 전에 청문을 받을 것을 수용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진술할 수 있는 전제로서 징벌혐의를 고지하며, 징벌혐의자가 징벌의결 절차뿐만 아니라 그에 앞선 조사절차에서도 필요할 때에는 변호인이나 대리인,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징벌이 부과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조사기간중 처우 불이익

행형법에서는 규율 위반으로 조사받게 되는 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징벌규칙 제7조 제1항은 수용자를 조사할 때에는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게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2항은 '소장은 규율위반사실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기간중 당해 수용자에 대한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 및 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과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조사받을 때에도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에 의한 것과 동일한 내용(금치처분 자체의 처우 제한)의 불이익처분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일단 조사받는 수용자는 징벌실과 동일한 독거실인 조사실에 수용되고,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서신수발 등을 제한, 금지함으로써, 징벌혐의의 조사가 곧 금치벌 집행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꼴이다.

또한 조사중인 수용자는 금치처분을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기상 후부터 취침 시간까지 바른 자세로 앉아서 반성해야 한다고 정하고(징벌규칙 제11조 - 특히 이 조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게만 적용되던 것이 2001년 1월 '조사중인 수용자'도 포함시킨 것으로 '개악'되었다), 이러한 준수사항 위반시 1월 이상 2월 이내의 금치에 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징벌규칙 제4조 제2호) 반성을 강제

하는 문제점이 있다.

요컨대 현행법령상 징벌혐의에 대해 조사받는 수용자의 처우상 불이익은 징벌(특히 금치)처분을 받는 수용자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여 그 지위가 구별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효과를 낳는 징벌규칙 제7조 제2항과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조사기간

조사기간은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하고,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 최장 14일까지 허용되는데(징벌규칙 제7조 제3항), 설문조사 결과 무응답자를 제외한 14명 중 4명은 14일 이상 조사를 받았다고 답하여 법령상 허용될 수 없는 장기간 조사가 행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조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조사 자체가 금치벌 집행과 유사해질 위험은 커진다고 하겠다. 단 2001년 개정에서 징벌규칙은 조사기간의 전부를 징벌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징벌규칙 제7조 제5항).

5) 징벌위원회 구성

징벌의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징벌위원회 구성이 공정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1999년 12월 개정된 행형법에서는 위원장(당해 소장)이 교도소 부소장, 과장 외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폐쇄적인 행형 중에서도 수용자의 인권 침해 우려가 높은 징벌의결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길이 열린 것은 바람직하나, 위원의 임명권이 징벌위원회 위원장인 소장에게 있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외부인사 참여를 필수로 하는 방법,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권관련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법, 규율위반 사안별로 징벌권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영국은 3일 이내의 금치처분만 교도소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법관이 참여하는 Board of Visitors(방문자위원회)에서 심리 결정한다고 한다.

김명곤, 앞의 글, 221면. 독일의 경우 징벌권은 시설의 장에게 있으나(행형법 제105조 제1항) 수용자의 징벌사유가 해당시설의 장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감독기관이 징벌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장규원, 앞의 책, 122면).

6) 징벌의결 내용의 고지

2001년 징벌규칙 개정시 '소장이 징벌을 집행하는 때에는 징벌혐의자에게 징벌의결서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9조 제2항). 그런데 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징벌을 받은 사람 중 소장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받은 사람은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8명은 소장 외 교도관이 구두로(4명), 알려달라고 요청한 후 비로소 통지받거나(1명), 지나가는 말로 알게 되는 등(3명) 적절한 절차에 의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수용자가 자신의 징벌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처분을 받아들일 것인지 혹은 불복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되므로, 징벌의결의 내용은 의결후 즉시 알려야 한다.

라. 불복절차

1) 규정과 원칙

수용자가 부당하게 징벌을 받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징벌의 고통은 더욱 크고, 수용자가 교정당국에 대해서 반발감만 갖게 될 우려가 크다(1996년의 한 조사에서는 징벌집행이 종료된 후 소감으로 억울하게 징벌을 받았다고 한 응답자가 104명 중 20.2%, 규율 위반행위에 비해 과중한 징벌을 받았다고 응답한 수용자가 51.9%를 차지하였다. 김명곤, 앞의 글, 217면).

보호원칙 제30은 '징벌을 받은 자는 상급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형사시설규칙 제35조는 규율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징벌의 종류와 기간, 징벌선고 권한을 갖는 기관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와 기관 또한 미리 법률이나 행정당국의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우리 행형법에는 징벌 결정에 대해서 수용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불복할 제도가 없고, 다만 청원권 행사와 소장면담(청원이나 소장면담은 징벌에 대한 불복과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이다. 설문조사 결과 징벌조사나 집행중 청원이나 소장면담이 가능했다는 응답자는 8명, 불가능했다는 응답자는 10명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사법구제방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일반적 구제방법인 형사고소,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는 징벌처분에 대한 구제로서 현실적인 의미가 없고, 또한 설령 부족하나마 이러한 절차를 밟으려 해도 현 제도로는 그 가능성이 원천봉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① 불복절차를 시작하는 기본 전제가 되는 「집필」이 금지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금지되고, ②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등 외부와의 교통권이 차단되어 조력을 전혀 받을 수가 없으며(물론 접견과 서신수발에 대해서는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있으나 -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 징벌위원회 위원장이 당해 소장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장의 허가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③ 수용자 자신이 어떤 징벌로 의결되었는지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불복절차 이용 및 고지의 실태

인권위원회의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징벌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정식의 불복절차를 밟은 응답자는 없었으며, 계장을 면담한 응답자가 1명, 나머지는 청원, 소장면담 신청이 거부되거나, 사법구제절차를 밟으려는 것이 제지되었으며, 2일간 징벌방 및 먹방에 갇힌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처분 당시 교정당국으로부터 불복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사람은 17명 중 1명에 불과했다.

3)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불복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큰 의미를 갖는다. 동법은 구금시설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여 서면 또는 면전 진정을 할 수 있

도록 하였고(제31조 제1항 :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 : 위원회 위원, 직원의 면전에서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구금 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징벌협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여(시행령 제9조 제3항), 징벌처분으로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자는 수용자 외에 인권침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도 포함되므로, 수용자 외의 제3자도 징벌처분에 대한 진정이 가능하다(동법 제30조 제1항). 수용자의 진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령은 구금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최초로 수용할 때 진정권의 의미와 방법을 고지하고,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시행령 제6조), 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 필기도구, 봉합용 봉투를 함께 비치할 것(제7조), 수용자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서신교환은 검열하지 아니할 것(제8조, 제9조 제2항)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가 2002년 2월과 5월 사이에 이루어져 시행령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된 때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시설 수용시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고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78명 중 40명, 청원 등 불복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통지받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55명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를 보면, 진정권에 대한 고지가 앞으로 잘 이루어질지 의구스럽다.

시설조사에서도 서울구치소의 경우 진정권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으나 참관할 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았고, 영등포구치소에는 7개의 진정함만이 부착되고 진정 안내문은 진정함 옆이 아니라 구치소가 설치한 건의함 옆에 있었으며 용지, 필기구, 봉투는 비치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영등포교도소 또한 진정함 5개와 안내문 19개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 필기구 등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교정당국은 징벌조사중이나, 징벌 집행중이라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수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 교육하고 징벌조사나 집행중인 수용자가 진정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가 없는 현재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권이 유의미하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형법도 국제인권법 규정과 같이 불복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복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가령, 교도소의 상급기관인 교정청 등에 '징벌 재심위원회'를 설치하여 징벌의결후 불복을 심리하거나, 교정당국 외의 사법기관이 재심하는 방안, 집행 정지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재심 신청권자로 수용자 외에 가족, 대리인을 포함시키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 징벌 집행

1) 징벌실의 실태

인권위원회가 시설조사한 2002년 4월 22일 당일 징벌실에서 징벌집행중인 것을 확인한 것은 의정부교도소와 영등포구치소 두 곳 뿐이었는데, 영등포구치소의 경우에는 1m×2m 크기의 징벌실에 3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그 외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는 징벌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나머지 시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징벌실을 참관하였다.

영등포구치소와 교도소의 징벌실 창문에는 창살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다. 영등포교도소의 징벌실은 약 0.95m×1m 크기로 공간이 매우 좁아 금치될 경우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가 생길 우려가 있어 보였으며, 성동구치소에서는 징벌실과 조사받는 수용자의 독거실을 구분하지 않는 1.06평(여자는 1.53평) 크기로 일반 사방과 비슷한 규모의 변기와 수도꼭지, 채광창이 있었다. 의정부교도소는 징벌실내에 칸막이 구분형태의 수세식 변기와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조명과 환기가 양호하였다. 조사 당시에는 사방이 비어 있어 침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모든 내용을 공개한 의정부교도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금 시설측에서 공개하는 부분만을 볼 수 있었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징벌실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징벌실에 창문이 없거나, 있는 경우도 아크릴판으로 막아서 햇빛과 통풍이 잘 되지 않는다는 증언, 보안과 지하실이나, 2중방과 유사한 징벌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므로, 그 진위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2) 계구 사용

계구 사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의 경향이다. 유럽형 사시설규칙 제39조는 피구금자가 자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구금자를 진정시킬 다른 수단이 실패한 때로 계구 사용을 한정함으로써 보충성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 행형법도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제14조 제3항)'고 정하고는 있지만, 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징벌 경험자 16명 중 10명은 조사기간이나 금치처분 집행시 계구를 착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조사기간중 6명, 집행기간중 4명). 이는 직접적으로 '징벌의 수단'으로서는 아니더라도, 계구 사용의 일반 조건인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방지'라는 명분으로 계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조사나 징벌집행중에도 규율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저지할 때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예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징벌집행의 일부로 행해진 것이므로, 위 행형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특히 설문에 답한 사람 중 계구 착용기간이 2주 이상이었던 응답자가 8명이고, 이 중에서 2월 이상 착용했던 사람도 4명인 것으로 나타나 계구가 남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계구 사용은 그 자체가 징벌의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징벌집행을 받는 수용자의 경우 굴욕적인 고통을 수반할 수 있어 문제이다. 보다 엄격한 계구 사용

요건을 법정하고, 징벌조사나 집행중의 사용은 자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3) 징벌집행기간의 상한 설정

현 행행법령은 징벌을 연속하여 집행할 경우 최장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 징벌규칙 제5조가 '징벌집행중' 규율 위반행위가 있을 때 1월 이상 2월 이내의 금치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징벌기간중에 또 징벌을 과할 수 있게 된 결과, 징벌(특히 금치)기간이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것을 사실상 제도화하고 있다.

행형법상 금치 2월의 징벌도 상당한 장기간인데 이것이 수회 이상 연속 집행될 경우 수용자에게 매우 가혹한 제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징벌을 연속해서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하나의 징벌 집행 완료 후 다음 징벌집행 사이에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의무관의 진단

행형법 시행령은 금치처분은 의무관이 수용자의 건강진단후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집행하도록 하고(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 집행중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진단하며(제146조), 종료시에도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제148조)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기준규칙 제31조나 유럽형사시설규칙 제38조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징벌집행중 의사의 검진을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0명 중 단 3명으로 나타나, 시설내의 열악한 의료설비와 인력문제 때문에 건강진단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금치처분은 수용자에게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의무관의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결론과 정책제언

실제 조사와 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국내 법규와 국제인권법의 원칙들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교정 목적과 구금시설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징벌제도가 실제로는 많은 경우 자유형을 본질적으로 가중시키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구금시설에서의 징벌을 제한하고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제 규정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집행기관의 자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거나, 오히려 잘못된 징벌집행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징벌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은, 비단 수용자의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국가와 구금기관에 위임된 자유형 집행의 권한을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응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징벌규칙에서 정한 수용자 준수사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특히 제35호의 포괄적 규정을 둠으로써, 행형당국의 자의적 조치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부족하므로, 보다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징벌법 정주의」 원칙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징벌집행중 다시 징벌처분을 할 수 있게 한 징벌규칙 부분은 삭제되어야 하고, 징벌기간중 계구 사용은 철저히 제한되도록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는 「금치」 처분의 경우,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이고 금치처분을 함과 동시에 여러가지 처우를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2중 3중의 징벌을 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보다 다양하고 합리적인 징벌의 종류를 마련하고 「금치」를 처분할 수 있는 징벌사유를 제한하는 등 징계 양정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징벌을 결정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일방적이어서 그 정당성이 의심되므로 소장이 위촉하지 않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징벌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이 적절히 방어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 동안

의 자유로운 접견·집필과 서신 왕래를 허용하며 금치의 효과를 가지는 처분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진술기회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징벌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불복·구제를 위하여는,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간 내(예컨대 구제절차 기간 동안 금치기간이 경과한다면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심위원회 등 불복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현행 불복절차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징벌사유나 진정권 등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적절한 감독권한 행사가 필수적이다.

Ⅲ. 설문지 전문 및 조사결과

- 설문지 전문
- 설문 응답자 인적사항
- 교도소, 구치소 설문조사 결과
- 검찰청 구치감 설문조사 결과
- 경찰서 유치장 설문조사 결과

구금시설의 개선 및 시설수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 반송용 설문지 >

이 설문은 구금시설의 개선 및 시설수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설문 응답시 유의사항을 잘 읽어 보시고 설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작성하여 보내 주시는 설문 응답서는 수용자의 처우개선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오니, 꼭 작성하여 첨부한 반송용 봉투를 이용하여 2002. 3. 31까지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문 응답시 유의사항]

1. 설문에 대한 응답은 ○표를 하거나 되도록 자세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2. 이감과 전방 등으로 인해 구금시설 2곳 이상을 경험하신 분은 영등포, 안양, 의정부 교도소, 서울, 성동, 영등포 구치소에 대해서만 응답해 주시고, 위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2곳 이상을 경험하신 분은 그중 맨 마지막에 살았던 곳에 대해서만 응답해 주십시오.
3. 자신이 경험했던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응답하고자 할 때는 각 설문 항목의 여백 부분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따라서 다음 설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교도소(구치소)에 관한 것입니다.

설문 응답자 기본사항

(원하지 않으면 굵은 선 안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써 주십시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성별	남 · 여		종교	()교, 없음	
나이	년생	혼인관계	유 · 무	입소전 직업	
적용법률	법 위반	형량	년 월	전과	()회
유치장	()년 ()월 ()일 경찰서		구치감	()년 ()월 ()일 검찰청	
입소 교도(구치)소	()년 ()월 ()일 교도(구치)소		출소 교도(구치)소	()년 ()월 ()일 교도(구치)소	
수용기간	교도(구치)소		()년	개월간	
	교도(구치)소		()년	개월간	
	교도(구치)소		()년	개월간	
	교도(구치)소		()년	개월간	
	교도(구치)소		()년	개월간	
석방형태	미결 상태에서,		집행유예	가석방	특사
	기결(1급) (2급) (3급) (4급) (무급) 상태에서,		만기출소	집행유예	가석방

3-1-2. 청원서를 제출하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 뒤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까?

- ① 1개월 이내 ② 1개월 ~ 2개월 ③ 3개월 ~ 5개월 ④ 5개월 이상
⑤ 답변을 받지 못했다.

3-1-3. 청원의 결과 어떤 결정이 나왔습니까?

- ① 기각 ② 각하 ③ 시정조치 ④ 처우에 반영 ⑤ 기타()

3-1-4. 어떤 내용을 청원하였습니까(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4. 수감생활 중 순회점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순회점검이란 교정시설의 상급기관(교정청, 법무부 등)에서 정기적으로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처우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재소자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고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① 있다 ② 없다

5. 순회점검 때 검열관에게 말(구두)이나 또는 문서로 청원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5-1. (순회점검 때 검열관에게 청원을 해 본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검열관에게 청원을 하려고 할 때 교도관들에게 제지를 당하거나 방해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5-2. (순회점검 때 검열관에게 청원을 해 본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청원 때문에 검열관이 교정시설을 떠난 다음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6. 수감생활 중 생긴 일 때문에 징벌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을 때 청원이나 소장과의 면담이 가능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III. 서신

1. 수감생활 중 생긴 일 때문에 형사고소 또는 소송을 위해서 집필신청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1. (소송 등을 위해 집필신청을 해 본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집필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2. (집필신청이 받아들여진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집필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몇 번이나 집필신청요구를 하였습니까?

- ① 1번 ② 2 ~ 3번 ③ 4 ~ 7번 ④ 8번 이상

2. 수감생활 중 생긴 일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밖에 있는 친지나 친구들에게 변호사 선임 등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기 위해 발송신청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발송신청을 해 본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2-1. 교정당국에 의해 편지의 발송이 불허된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몇 번이나 있습니까)?

- ① 있다 (번) ② 없다

6-1. (징벌위원회에 출석했던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징벌위원회에서 직접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 ① 직접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
- ② 직접 이야기할 수는 없었고, 대리인(1급수의 동료 재소자)을 통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었다.
- ③ 직접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시간을 너무 적게 주어 설명이 부족했다.
- ④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7. 징벌의 종류와 기간, 징벌사유는 어떻게 통지받았습니까?

- ① 징벌위원회에서 소장으로부터 구두(말)로 통지받았다.
- ② 징벌위원장(소장)의 도장이 찍혀있는 서면으로 정식 통보받았다.
- ③ 소장 이외의 교도관으로부터 구두로 통지받았다.
- ④ 징벌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비로소 통지받았다.
- ⑤ 지나가는 말로 내가 징벌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 ⑥ 기타()

8. 징벌처분을 받았을 때 교정당국으로부터 징벌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9. 징벌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였다.
- ②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려고 하였으나 교정당국에 의해 제지당했다.
- ③ 소장과 면담을 하였다.
- ④ 소장과의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
- ⑤ 사법적 절차를 밟았다(소송제기/ 관련자 형사고소).
- ⑥ 사법적 절차(소송제기/ 관련자 형사고소)를 밟으려 했으나 교도소(구치소) 측으

로부터 제지당했다.

- ⑦ 기타()

10. 징벌조사기간 중이나 징벌 집행 중 계구(포승, 수갑, 사슬, 안면보호구)를 착용한 일이 있습니까(있다면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징벌조사기간 중에 계구를 착용한 일이 있다.
- ② 징벌집행기간 중에 계구를 착용한 일이 있다.
- ③ 착용한 경험이 없다.

(계구를 착용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10-1. 계구를 착용한 적이 있다면, 어떤 계구를 착용하였습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포승 ② 수갑 ③ 사슬 ④ 안면보호구 ⑤ 기타()

10-2. 가장 오랫동안 계구를 착용한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① 1 ~ 3일 ② 4 ~ 7일 ③ 8일 ~ 13일
- ④ 2주 ~ 1달 ⑤ 1달 ~ 2달 ⑥ 2달 이상

11. 징벌을 받고 있을 때 당신이 의사의 검진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의사로부터 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V. 의 료

1. 교도소(구치소)에 입소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지받은 내용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정기검진이 있다는 것

- ② 몸이 아프면 병사에 입원할 수 있다는 것
- ③ 의무관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 ④ 약품을 자비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
- ⑤ 외부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는 것
- ⑥ 기타 ()
- ⑦ 아무 것도 고지 받지 못했다.

2. 교도소(구치소)에 입소할 때 자격 있는 의사로부터 건강진단(신체검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2-1.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내용의 검사를 받았습니까(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키, 몸무게 측정
- ② 시력 측정
- ③ 치아 검사
- ④ 혈압 검사
- ⑤ 엑스레이 촬영
- ⑥ 피 검사
- ⑦ 소변 검사
- ⑧ 의사가 청진기 대고 진찰
- ⑨ 문진(말로 어디 아픈 곳이 있는지 묻는 것)
- ⑩ 기타()

3. 수감생활 중 (입소할 때를 제외하고) 의사로부터 정기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얼마 만에 한번씩 받았습니까)
- ② 없다

4. 교도소(구치소)에 치과의사(공중보건의 포함)가 있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③ 모르겠다

5. 교도소(구치소)에 자격 있는 약사가 있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③ 모르겠다

6. 몸이 아파 의무관에 가고자 했을 때 의무관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 ① 쉬운 일이었다.
- ② 보통이었다.
- ③ 힘들었다.
- ④ 거의 불가능했다.

6-1. 의무관에 가기 어려웠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 ① 대기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 ② 의사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 ③ 교도관이 맘대로 의사의 진단이 필요 없다고 해서
- ④ 정해진 진료시간(오전 9시~5시)이 아니라는 이유로
- ⑤ 기타

6-2. 의무관에 제때 가지 못해서 건강이 악화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7. 아파서 의무관에 가면 누가 진찰을 했습니까?

- ① 의무관
- ② 공중보건의
- ③ 교도관
- ④ 재소자
- ⑤ 모르겠다

8. 아파서 의무관(또는 약국)에 갔을 때 누가 약을 조제하였습니까?

- ① 의무관
- ② 공중보건의
- ③ 약사
- ④ 교도관
- ⑤ 재소자
- ⑥ 모르겠다

9. 아팠을 때 병사에 입원하기는 어땠습니까?

- ① 쉬운 일이었다.
- ② 보통이었다.
- ③ 힘들었다.
- ④ 거의 불가능했다.

10. 교도소(구치소)에서 의무관에게 치료받을 때 치료비용을 당신에게 내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0-1. (앞서 '예' 라고 답한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비용을 부담하라고 했습니까?

10-2. 교도소(구치소)에서 의무관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1. 외부병원의 진찰이나 진료를 신청해 본 일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1-1. 외부병원으로 나가는 것은 어땠습니까?

① 언제나 가능했다. ② 돈이 없이는 어려웠다. ③ 돈이 있어도 어려웠다.

11-2.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였습니까?

① 본인

② 교도소(구치소)

③ 본인이 부담한 적도, 교도소(구치소)에서 부담한 적도 있었다.

[구금시설 조사설문(검찰청 구치감)]

1. 한번 구속수감 되었을 때 구치감에는 몇 번이나 갔습니까?

① 1번 ② 2 ~ 3번 ③ 4 ~ 6번 ④ 7번 이상

2. 구치감에 감혀 있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나 머물러 있었습니까?

① 1시간 이내 ② 1시간 ~ 3시간 ③ 3시간 ~ 6시간

④ 6시간 ~ 12시간 ⑤ 12시간 ~ 24시간 ⑥ 기타()

3. 구치감에 법전이 비치되어 있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1. 법전을 보고자 담당자에게 요구하였을 때 볼 수 있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기타()

4. 구치감에 들어가서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4-1 수치심을 느꼈다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5. 구치감에 있었을 때 식사는 제공되었습니까?

① 식사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서 굶었다.

② 식사가 제때 제공되었다.

③ 식사시간이 지난 후 밥을 주었다.

- ④ 구치감에서 식사가 제공되지는 않았고, 구치소에서 싸온 도시락을 주었다.
- ⑤ 기타()

6. 구치감의 위생(청결)상태는 어떠했습니까?

- ① 깨끗했으며, 청소도 잘되어 있었다. ② 적당했다.
- ③ 너무 더러워서 불쾌했다. ④ 기타()

7. 구치감의 환기상태는 어떠했습니까?

- ① 환기가 잘되었고, 실내 공기가 맑았다. ② 보통이었다.
- ③ 환기가 되지 않아 악취가 심했다. ④ 기타()

8. 구치감의 조명상태는 어떠했습니까?

- ① 적당한 밝기여서 머무는 데 불편이 없었다. ② 적당했다.
- ③ 너무 어두워서 생활하기 불편했다. ④ 기타()

9. (여름에 갇혔던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냉방시설이 가동되었습니까?

- ① 일체의 냉방시설이 없었다. ② 냉방시설은 있었으나 틀어주지 않았다.
- ③ 냉방시설을 틀어주었다. ④ 기타()

10. (겨울에 갇혔던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난방시설이 가동되었습니까?

- ① 일체의 난방시설이 없었다. ② 난방시설은 있었으나 틀어주지 않았다.
- ③ 난방시설을 틀어주었다. ④ 기타()

10-1. 구치감에 난방시설이 있었다면 어떤 시설이었습니까(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감방 안에 (난로/ 라디에이터/ 온풍기/ 온돌/ 기타())가 설치되어 있었다.
- ② 복도에 (난로/ 라디에이터/ 온풍기/ 기타())가 설치되어 있었다.

11. (겨울에 갇혔던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담요나 모포 등 추위를 막기 위한 물품을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지급받았다. ② 지급받지 못했다.
- ③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너무 더러워서 불쾌했다.
- ④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추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12. 구치감에 들어갈 때 수갑이나 포승 등의 계구를 풀어주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경우에 따라 달랐다.

13. 구치감 안에서 계구를 착용하였다면, 어떤 계구였습니까(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수갑 ② 포승 ③ 사슬(연쇄) ④ 안면보호구 ⑤ 기타()

14. 구치감에서 화장실 사용은 자유로웠습니까?

- ① 화장실이 감방 안에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 ② 화장실이 감방 밖에 있었지만, 직원의 허락을 받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 ③ 화장실에 가려면 직원들의 심한 간섭을 받아야 했다.
- ④ 기타()

15. 구치감 화장실의 위생상태는 어떠했습니까?

- 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② 보통이었다.
- ③ 사용하기 싫을 정도로 더러워 불쾌했다. ④ 기타()

16. 화장실에 차폐막(가리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설치되어 있었지만, 수치심을 느낄 만큼 낮았다.

17. 계구를 착용했던 분은 화장실에 갈 때는 계구를 풀어주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계구를 착용하고 용변을 봐야 했다)
- ③ 경우에 따라 달랐다.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경우에 따라 달랐다

14. 유치장 안에서도 계구를 착용하였다면, 어떤 계구였습니까(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수갑 ② 포승 ③ 사슬(연쇄) ④ 족쇄 ⑤ 기타()

15. 유치장에서 화장실 사용은 자유로웠습니까?

- ① 화장실이 감방 안에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② 화장실이 감방 밖에 있었으나 직원의 허락을 받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③ 화장실에 가려면 직원들의 심한 간섭을 받아야 했다.
 ④ 기타()

16. 유치장 화장실의 위생상태는 어떠했습니까?

- 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② 보통이었다.
 ③ 사용하기 싫을 정도로 더러워 불쾌했다. ④ 기타()

17. 화장실에 차폐막(가리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설치되어 있었지만, 수치심을 느낄 만큼 낮았다.

18. 계구를 착용했던 분은 화장실에 갈 때는 계구를 풀어주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계구를 착용하고 용변을 봐야 했다)
 ③ 경우에 따라 달랐다.

19. 유치장에 비치돼 있던 일상용품은 무엇이었습니까(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수건 ② 비누 ③ 칫솔 ④ 치약 ⑤ 휴지
 ⑥ (여자의 경우) 생리대 ⑦ 기타()

20. 유치장에서 세수와 목욕(샤워)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까?

- ① 언제나 자유롭게 씻을 수 있었다.

② 정해진 시간에는 자유롭게 씻을 수 있었다.

③ 씻는 것은 직원들의 맘대로였다.

④ 세면시설은 있었지만, 목욕(샤워)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⑤ 기타()

20-1. 유치장에서 하루 몇 번 양치질을 할 수 있었습니까?

- ① 세 끼 식사후 모두 ② 아침과 저녁 두 번 ③ 한 번 ④ 기타()

21. 유치장에서 돈, 담배, 귀중품 등의 소지품을 빼앗기거나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소지품을 빼앗기거나 돌려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21-1. 어떤 소지품을 빼앗겼거나 돌려받지 못하였습니까?

()

21-2. 누가 소지품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 ① 경찰 공무원 ② 의경이나 전경 ③ 동료 수감자 ④ 기타()

22. 유치장에서 맞거나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2-1.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면 누가 가혹행위를 했습니까?

- ① 경찰 공무원 ② 의경이나 전경 ③ 동료 수감자 ④ 기타()

22-2. 어떤 이유 때문에 가혹행위를 당했고, 어떤 종류의 가혹행위를 당했습니까(구체적으로 써 주시오)?

23. 유치장에서 아팠을 때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게 가능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아픈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24. 유치장에 있을 때 여성과 남성의 거실이 서로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 수치감을 느끼신 적이 있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기타 ()

25. 검찰의 구치감과 비교하여 경찰의 유치장이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본 설문에 끝까지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설문내용은 우리나라 구금시설의 개선과 구금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 응답자 인적사항

내역	응답인원수	비고
1) 기명 응답자	52	
2) 무기명 응답자	26	
합계	78	

내역	응답인원수	비고
1) 강원	1	
2) 경기	6	
3) 광주광역시	1	
4) 서울	38	
5) 인천광역시	1	
6) 전남	1	
7) 충북	1	
8) 무응답	29	
합계	78	

내역	응답인원수	비고
1) 남성	67	
2) 여성	4	
3) 무응답	7	
합계	78	

내역	응답인원수	비고
1) 기혼	31	
2) 미혼	37	
3) 무응답	10	
합계	78	

내역	응답인원수	비고
1) 20세 이하	1	
2) 20세 이상 30세 미만	17	
3) 30세 이상 40세 미만	22	
4) 40세 이상 50세 미만	21	